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경제지원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경제지원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상위법령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법령상 협의회로 이와 관련된 중복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.

##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로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, (안 제5조 개정)
-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기능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  
(제7조 및 제8조 삭제)

##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4. 11. 부터 5. 1.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5. 18.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##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##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####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922066
--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5. 26.
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
(경제지원과장)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중복된 조례규정을 삭제

## 2. 주요내용

-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
  - 제5조제3항 중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”를 “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  -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참조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참조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
- 2)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

###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# 다. 기타사항

##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4. 11.~5. 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##### 2) 규제심사: 의견 없음

#####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###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#####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##### 6) 조례·규칙심의결과: 원안가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

###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”를 “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</u>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<u>제7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)</u>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,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④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구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</p> <p>2. 구 지역 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</p>	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법 제7조</p> <p>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삭제

나. 구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
다. 구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라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 ·납품업체·농업인 등 이해 관계자

마. 그 밖에 달서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4. 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
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.

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,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8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
1.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

<삭 제>

2.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
3.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
4.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, 정부에 대한 건의 등
5.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 및 취소
6.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
7. 대·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 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
  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
 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   -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 -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  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4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4조의3(협의회의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· 시간 ·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  
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  
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1의2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
  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  3.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대 ·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